

턴키방식 플랜트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ICC 표본 계약서의 해설을 중심으로 -

오 원 석*
이 기 옥**

-
- I. 서 론
 - II.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특성
 - III. 공급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
 - IV. 구매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
 - V.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플랜트 수출, 턴키계약, ICC 표본 계약서, 공급자, 구매자

I. 서 론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실무자들에게 국제매매계약, 국제대리점계약, 국제프랜차이즈계약, 턴키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그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변호사 (교신저자)

표본을 제시하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Model Contract를 개발하였다. 이 가운데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는 턴키방식에 의한 플랜트 수출계약에 대한 표본 계약서¹⁾로, 표제와 전문을 비롯하여 6개의 장(Chapter)과 37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다.²⁾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를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말로 옮기면, 엄격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An Industrial Plant는 ‘산업설비’에 해당하고, The Turnkey Supply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업설비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공급 계약”이라 할 수 있다.³⁾ “Turnkey”는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설계시공일괄공급(또는 도급) 계약’이라 하기도 하며, 일본에서는 이를 設備一括請負契約이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턴키계약을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이라 하고, 그에 대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행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턴키계약에서 공급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특정한 목적을 갖춘 시설을 완성하여 제공하는바, 그 시설의 설계와 건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에 투여·장착되는 장비와 부품 등도 아울러 수출한다. 특히 위와 같은 장비나 부품은 고도의 기술이 투입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범용성을 갖지 않아 시

1) Model이란 단어는 ‘표준’, ‘모범’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긴 하나, 본고에서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본”이라 하며, 본문에서는 이를 ‘ICC 표본 계약서’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2) Chapter 1 General Clauses, Chapter 2 Supply Of Technical Documentation, Equipment And Spare Parts, Chapter 3 Erection, Testing, Taking Over And Training, Chapter 4 Price, Payment Conditions, Bank Guarantees, Chapter 5 Non-Performance And It's Consequences, Chapter 6 Final Clauses.

3) 대외무역법 제32조 제①항 참조. 하지만 본고에서는 An Industrial Plant를 “플랜트”라 하고, The Turnkey Supply는 “턴키 또는 턴키공급”으로 사용한다.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등 참조.

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동시에 현지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⁵⁾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특성을 제시하고, 턴키방식 플랜트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을 공급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각각 고찰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플랜트계약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상당수 있으나,⁶⁾ 본고에서는 ICC에서 제공하는 표본계약서 조항의 해설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계약체결시 필요한 사전지식과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차별성을 둔다.

II.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특성

1. 플랜트 수출의 개념

플랜트 수출이란 물품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 또는 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 5) 턴키계약의 대표적인 거래형태로는 원전수출이 있는데, 이는 2000년부터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상승과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을 차세대 주력 에너지원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수출은 전문기술 분야의 연구 및 용역을 포함한 원전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함(기술의 이전)은 물론, 핵심 기기의 설치(설비투자)와 시운전, 시운전 정비,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상 부분의 점검 및 정비서비스(사후관리)를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합무역거래형태이다. 김용일·박광서,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2, p.332 참조.
- 6) 김호정, “디자인빌드(Design Build)와 턴키(Turnkey)계약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할당방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計劃系」 제26권 제8호, 대한건축학회, 2010; 방민석,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현황 및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GRL 연구논총」 제11권 제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9; 이승우,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윤준선·백준홍, “건축턴키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클레임 예방을 위한 클레임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로서의 종합수출을 의미한다.⁷⁾ 플랜트 수출은 발주형식, 시공자의 수주형태, 시공자의 업무범위, 발주자의 공사금액 결정방법, 대금지급 조건, 계약체결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나⁸⁾, 플랜트 수출에는 통상적으로 플랜트의 설치, 시운전, 운전교육, 하자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플랜트 수출은 주로 턴키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실제로 턴키방식이 플랜트 수출 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플랜트 수출 계약에 있어서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를 'owner' 또는 'employer', 플랜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또는 계약자)를 'contractor' 또는 'employee'라 부르나⁹⁾, ICC가 제시하고 있는 턴키계약 서식에서는 각각 "the Supplier, the Purchaser", 즉 "공급자, 구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⁰⁾

플랜트 수출 계약은 보통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데, 입찰공고와 사전자격심사 → 입찰참가자의 결정과 초청 → 입찰권유와 입찰 → 낙찰과 결정 등의 순서를 거쳐 통상은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데, 입찰의 공고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입찰이 청약(offer), 낙찰이 승낙(acceptance)에 각각 해당된다.¹¹⁾ 이러한 턴키방식에 의한 플랜트 수출 계약은 비전형 계약의 일종으로 플랜트의 설치를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며, 플랜트 설치를 위한 자재의 공급이라는 매매계약의 측면과 플랜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등 기술이전 계약의 측면도 포함하는 혼합계약(mixed contract)이다.

7) 오원석, 최신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2011, p.171.

8) 플랜트 수출 계약의 유형은 오원석, 전계서, pp.172~173, 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박영사, 2011, pp.353~354 참조.

9) 최준선 외 공저, 전계서, p.352 참조.

10) 턴키방식에 의한 플랜트 수출 계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국제상거래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계약, 즉 국제거래계약의 일종으로 플랜트를 공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플랜트 수출 계약이고, 플랜트를 공급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플랜트 수입 계약이 된다. CISG Art. 1 (1) 참조.

11) 오원석, 전계서, p.173. 동지, 김상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pp.222-224.

2. 플랜트 수출의 특성

플랜트 수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턴키방식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플랜트 수출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규모가 대규모이어서 거래금액이 크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적절한 자금조달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급자로서는 구매자의 자금조달의 방법이 플랜트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랜트 수출은 통상 ‘타당성 조사, 입찰시방서 작성 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의 진행 → 설계도면의 작성 →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 플랜트의 제작 → 플랜트의 현지운송 → 플랜트의 시공 → 시운전 → 플랜트 운용에 대한 지도’와 같은 장기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플랜트 수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환율 또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신기술의 등장, 플랜트가 설치될 국가의 정치적 변동 등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다.¹²⁾ 이러한 위험들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계약서에 규정해 둬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¹³⁾.

셋째, 플랜트는 기계장치, 설비 등 물리적 설비 외에 그 이용에 관한 노하우나 기술지식 등이 종합된 일괄적인 시스템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경험 등 관리능력이 필요하다¹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능력을

12)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발생한 우리나라와 리비아 간의 외교마찰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리비아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분쟁으로 인하여 향후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다.

13) 이현목, “[이현목 변호사의 국제무역분쟁] 플랜트(Plant) 수출계약 실무 - 턴키계약을 중심으로 - (1) (<http://blog.naver.com/hunmook/50096172618>) 2010 참조. (이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이현목 변호사가 ‘주간무역’에 [이현목 변호사의 국제무역분쟁]이란 제목으로 연재하였던 것으로 편의상 ‘주간무역’에서 인용하지 않고 이하에서도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14)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개정증보판, 2006, p.371.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랜트 건설을 위한 비용은 플랜트 가동 후 발생하는 수익에 의해 회수되도록 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랜트 수출은 상업, 무역, 경영, 회계, 법률, 기술, 엔지니어링 등 다방면의 지식이 총동원되는 국제 상거래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¹⁵⁾.

II. 공급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

이하에서는 턴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등 전 과정에 걸쳐 예측할 수 있거나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또는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을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와 구매자의 비즈니스와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ICC 표본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ICC 표본 계약서 총 6개의 장 가운데 그 핵심이 되는 제2장~제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⁶⁾

1. 기술문서, 설비 및 부품의 공급

플랜트 완성을 위해서는 우선 설비를 조달하여 이를 시공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를 설치하고 플랜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 문서들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랜트가 완성된 후 가동되더라도 소모품 등 부품이 상당기간 공급되어야 만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15) 전게서, pp.371~372.

16) 이를 위하여 본고의 제3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을, 제4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을 ICC 표본 계약서를 기초로 고찰하는바, 특히 공급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하였다.

조달에 관하여도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시방서, 평면도 등 설계도면에 따라 설비를 진행하는데, 플랜트의 완성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 상당수의 설비들은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사 간에 합의된 기한 내에 설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설비의 공급과 그 기한 등에 관하여도 명시하여야 한다.¹⁷⁾ 특히 플랜트의 공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플랜트의 위험¹⁸⁾이 이전되는 시기와 플랜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는 운송과정 중에 플랜트가 당사자의 과실 없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 누가 그러한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언제 플랜트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이다.¹⁹⁾

플랜트의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시기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데,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시기를 반드시 동일하게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각각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턴키계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플랜트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었을 때에 플랜트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도록 한다. 한편, 공급자는 플랜트의 설치, 시운전, 최종 시험운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플랜트의 위험은 플랜트의 설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때에

17) ICC Model Contract, Art. 10 - Supply of the Equipment & Annex 2. 턴키계약에 관한 ICC 표본 계약서의 정확한 영문 명칭은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Pub. No. 653E, 2003”이지만, 본고에서는 “ICC Model Contract”로 명기한다.

18)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플랜트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을 의미한다. 예컨대 플랜트가 트럭에 실려서 운반되는 도중에 강력한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붕괴 때문에 플랜트가 손상되었다면 공급자와 구매자 중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플랜트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19) 플랜트의 소유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소유권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랜트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설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공급자의 채권자는 플랜트를 압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로 플랜트의 소유권이 이미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구매자의 채권자가 플랜트를 압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²⁰⁾

플랜트가 완성된 후라도 플랜트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 또한 중요하다. 플랜트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대규모의 설비이기 때문에 플랜트 완성 후 공급자가 플랜트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상당 기간 동안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놓고서도 플랜트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¹⁾

2. 설비의 설치, 시험, 인도 및 교육

현장에 설비가 도착되면 공급자가 설비를 조립한 후 시험을 거쳐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구매자가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플랜트 수출계약, 특히 턴키방식에 의한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공급자의 핵심적인 이행의무이다.²²⁾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또는 공급자가 직접 작성한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면 되므로 플랜트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완성시기, 완성시기를 도과한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공급자의 인력의 파견에 관한 사항, 감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시공한 후에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시운전 및 운전지도 등 플랜트 시공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²³⁾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주요 협의내용과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20) 이현목, 전계 블로그 (4), 참조.

21) ICC Model Contract, Art. - 13 Spare parts.

22) 이와 같이 계약의 핵심사항이 되는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공급자가 플랜트를 설치하는데 구매자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전체 플랜트의 공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나 플랜트 완성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상호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C,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 ICC Pub. No. 659E, 2007, pp.50~51 참조.

23) 이현목, 전계 블로그 (2), 참조.

1) 사전조치

우선, 설비의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플랜트 설비가 계약에서 목적인 대로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기 위한 당사자 간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급자에 의하여 운송된 설비의 보관에 관한 문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매자의 사전조치 사항,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공급자와 구매자는 현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파견하게 되는데, 상호 파견한 현장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물론이고, 설비를 직접 설치할 직원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누구의 부담으로 고용할 것이며, 고용된 직원이 장기간에 걸친 설비의 설치 기간 동안 불편이 없도록 통역, 숙소, 이동수단 등 편의시설 및 편의조치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귀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턴키계약에 있어서는 위의 대부분의 사항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비용은 계약대금에 반영되어 있다.²⁴⁾

2) 설비의 설치

위와 같이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치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비가 운송된 후 언제부터 설치를 개시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공급자나 구매자 양측 모두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일정표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고, 양당사자는 설비의 설치에 앞서 필요한 조치들이 모두 하자 없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설치 개시이전까지 상호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설비의 설치를 개시한 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는 도중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의 누락으로 전체 플랜트 설비의 설치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ICC 표본 계약서는 이에 관하여 설치의 준비, 설치의 시작, 설치의 수행 등으로 세

24) ICC Model Contract, Art. 14 - Obligations of the Parties & Annex 8, Art. 15 - Management of the Site, Art. 16 - Supplier's personnel & Annex 7, Art. 17 - Travel and lodging expenses of Supplier's personnel.

분하여 규정하고 있다.²⁵⁾

3) 설비의 시험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공급자는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고, 그 시험결과를 인증 받은 후에야 플랜트의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통상 설비가 계획하고, 설계하였던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운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플랜트의 운영이전에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개개설비의 설치나 운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만이 각각의 설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플랜트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완벽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플랜트를 시운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설치에 대한 시험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 후 설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며, 확인의 내용은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험이나 검사의 과정에서 결함이나 결점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험이나 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나 결점으로 인하여 플랜트를 가동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²⁶⁾

4) 시험가동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치 검사가 완료되면 공급자는 비로소 플랜트를 시험가동 할 수 있게 되며, 시험가동을 거쳐 플랜트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완공된 플랜트는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구매자는 인수한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급자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계약의 주된 이행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25) ICC Model Contract, Art. 18 - Erection.

26) ICC Model Contract, Art. 19 - Erection testing, Art. 20 - Erection Certificate, 20.2 - Defaults or certificate.

플랜트를 설치한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운전을 위해서는 시운전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시운전을 위한 자재나 재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시제품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시운전의 목적은 플랜트를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시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시제품의 생산까지 마쳤으면 마지막으로 성능시험을 한다. 성능시험은 플랜트를 72시간 내지 일주일과 같이 장시간 가동시킨 후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²⁷⁾ 이러한 시운전과 성능시험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시운전이나 성능시험 과정에서 성능 향상, 설치의 결함이나 결점이 발견된 경우 설치를 변경하거나 수정, 추가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은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로서 계약서에 반영시켜 두어야 한다.²⁸⁾

5) 설비의 완성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플랜트가 본래 목적인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즉 플랜트의 실질적 완성(substantial completion)이 있으면 구매자는 검수증명서(certificate of acceptance) 또는 준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를 발급한다. 이는 플랜트가 완성된 사실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이를 발급하는 시점에 플랜트는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인도된다. 이에 따라서 플랜트에 관한 위험은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때부터 불가항력적 사유 등 공급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플랜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매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도 공급자는 하자담보기간 동안은 플랜트의 하자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²⁹⁾

27) 이현묵, 전계 블로그 (4), 참조.

28) ICC Model Contract, Art. 21 - Start Up of the Plant, Art. 22 - Performance Testing & Annex 9.

29) 최준선 외 공저, 전계서 p.360, 이현묵, 전계 블로그 (4), 참조.

그렇다면, 플랜트의 실질적 완성을 언제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완성된 플랜트에 대한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관하여 ICC 표본 계약서는³⁰⁾ 인수인계 시점을 어느 때로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인수인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플랜트의 미세한 조정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인수인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가격, 지급조건 및 은행보증

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계약대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통화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대금지급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대금지급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계약대금의 지급은 물론 설비의 조달에 따른 관세 등의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이 합의되어야 한다. 먼저, 대금지급의 방식은 현금지급 방식과 신용장에 의한 지급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현금지급방식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플랜트의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유보하여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에 플랜트를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로서는 구매자 소재국의 조세제도를 입찰이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 중에 세금납부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구매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계약서에서 세금의 종류와 그 부담할 자를 명시하게 되는데 구매자 소재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하고,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 및 관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구매자 소재국과 공급자 소재 국가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같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 조약에 근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³¹⁾³²⁾

30) ICC Model Contract, Art. 23.1 - Taking Over, Art. 23.5 - Taking into operation without the Supplier's permission.

나아가 구매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 두 가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첫째는 지연이자(Delay Interest or Default Interest)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대금지급이 구매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지급 일로부터 일정기간(grace period)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후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규정이다.³³⁾

이와 아울러, 계약대금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서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 또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받을 수 있다. 약속어음은 플랜트의 인도와 동시에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 설비의 공급시마다 인도전 약속어음(drawdown note)을 발급받고 플랜트가 완성되어 인도할 때에 인도전 약속어음과 교환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급받기도 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시기 및 발행매수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양식과 내용을 확정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토록 한다. 약속어음상의 원금 및 이자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수출계약서상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지급보증서 및 보증신용장도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 시기 및 발행기관을 계약서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미리 양식과 내용을 확정하여 부속서류로 첨부한다.³⁴⁾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급자도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턴키계약에서는 통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두 가지의 보증서를 제공한다. 하나는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Guarantee)³⁵⁾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Guarantee)³⁶⁾

31) 한국수출입은행, 전계서, p.407.

32) ICC Model Contract, Art. 28 - Taxes, duties, etc.

33) 이현목, 전계 블로그 (5), 참조.

34) ICC Model Contract, Art. 26 - Payment conditions & Contract Schedule G.

35) 선수금환급보증은 관련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수익자의 선수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오원석·히해관·김중년 공역,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 p.8 참조.

36)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의 시작에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핵심부분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여진다. 국제적 보증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 상세히는,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

이다.

4. 계약 불이행과 해결방안

플랜트수출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고, 그 공사금액도 대규모이며 상업, 무역, 경영, 회계, 법률, 기술, 엔지니어링 등 다방면의 지식이 총동원되는 국제 상거래의 집합체이다 보니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이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이 되는지는 물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플랜트를 인수인계한 후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세히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제반사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공급자가 이행 기한 이전에 조기 이행하여 구매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조기이행 조항을 두어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가항력 사유나 구매자측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사 중지 지시에 의해 이행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행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구매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구매자의 계약위반 또는 그 관리자의 공사변경이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가산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⁷⁾

나아가 플랜트가 완공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플랜트의 생산능력, 제품의 품질, 원자재의 소비량과 수율(yield)등을 보증하는 것을 성능보증(performance guarantee)이라 하는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플랜트의 성능보증치 보다 생산능력이 상회하거나, 운영경비가 하회하여 구매자에게 이익

무역상무학회, 2002. 2, p.23 참조.

37) ICC 표본 계약에서는 설비조달의 지연에 대하여는 29.1 Late delivery of Equipment & Contract Schedule I-1에서, 플랜트의 인도지연에 대해서는 29.2 Late Take-Over & Contract Schedule I-1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의 누적적 한도에 대하여는 29.3 Cumulation of liquidated damaged & Contract Schedule I-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³⁸⁾

다음은 하자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하자담보란 성능시험 또는 플랜트 완공 후 플랜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공급자의 과실 이외의 사유(구매자의 운전 또는 보수유지 과실,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공급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³⁹⁾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기간과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하자담보기간(defect liability period)의 기산점은 빠를수록 공급자에게 유리한데, 플랜트 완공 시 또는 성능시험 완료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이를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인도시점부터 기산하여 그 후 12개월이나 아니면 검수 후 6개월 중 늦게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구매자의 사정으로 검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기간을 하자담보기간에서 공제 또는 단축해야 하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있는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교체 부분에 한하여 다시 하자담보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making goods defects)의 범위는 수리, 변경 또는 교체에 국한하도록 하고 공급자 또는 감리기사 등의 지시에 반하여 운전·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결함이나 시일의 경과나 사용에 따른 통상의 마모, 그리고 하자가 구매자가 제공한 시방서나 도면 등의 오류에서 기인한 경우 등은 하자담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계약위반으로 돌릴 수 있는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리교체를 위해서 잠시 생산이 중단된 경우의 손해와 기타의 부수적인 손해는 공급자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⁴⁰⁾ ICC 표본 계약서에는 11개의 조문으로 하자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⁴¹⁾

38) 한국수출입은행, 전계서 pp.413~414.

39) 이현목, 전계 블로그 (6).

40) 한국수출입은행, 전계서 pp.417~418.

Ⅳ. 구매자 입장에서의 실무상 유의점

1. 기술문서, 설비 및 부품의 공급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될 설비에 대하여 구매자는 플랜트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부품의 품질에 대해 공사현장에 반입될 때 계약에 정해진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에 입회할 권리가 있다. 검사 및 시험에 참가할 때 그 사실을 자신의 감리기사나 대리인에게 통지하되, 시간은 통상 작업시간 중에, 장소는 제조 중인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험 및 검사의 실시 조건은 계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플랜트 수출국의 관련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따른다.⁴²⁾ 검사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규정하여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검사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검사 및 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구매자의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구매자는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공급자에게 제시하고 공급자는 이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만일 검사결과 플랜트에 하자가 있다면 서면으로 하자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구매자가 위와 같이 사전에 검사 및 테스트를 하여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⁴³⁾ 검사 및 시험결과 재료 및 부품에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후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시험할 때 구매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시험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구매자에게 송부하고, 구매자는 보고서를 정확한 것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 및 시험의 실시 조건,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계약서에 규정하여 무리한 검사나 필요이상의 시험이 요

41) ICC Model Contract, Art. 31 - Defects in the Plant after Taking Over.

42) 한국수출입은행, 전계서, p.439.

43) 이현목, 전계 블로그 (3), 참조.

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⁴⁴⁾

또한 구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시공에 사용될 자재와 부품이 계약에 정한 품질에 합치하는지 검사하고 시험할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사와 시험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검사와 시험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시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로부터 받은 이의에 대하여 공급자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⁴⁵⁾

2. 설비의 설치, 시험, 인도 및 교육

구매자는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공사현장을 공급자에게 인도한다든가, 구매자가 공급하거나 제공할 물품 또는 용역, 구매자 소속 국가에서 받아야 할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하고, 공급자가 신청할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협력의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또한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플랜트를 인수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호 합의를 통해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플랜트의 가동과 플랜트를 가동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의 원조,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한의 부여 등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공급자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이는 다시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와 구매자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44) ICC Model Contract, Art. 12 - Taking delivery of the Equipment.

45) 최준선 외 공저, 전계서, p.361 참조.

46) ICC Model Contract, Art. 24 - Training of Purchaser's Personnel(Annex 10).

3. 가격, 지급조건 및 은행보증

공급자의 주된 이행의무가 플랜트를 완성하여 구매자에게 인계하는 것이라면 구매자의 주된 이행의무는 대금의 지급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구매자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까지 플랜트가 정상적으로 완공되어 가동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플랜트 완성의 대가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액이 턴키계약 대금의 총액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수익(cost plus fee)인 실비의 일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⁴⁷⁾ 이러한 경우, 지급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액을 기재한 문자와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나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국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지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⁴⁸⁾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1회에 모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 선수금(Advance Payment), 중도금(Interim Payment), 유보금(Retention Payment)의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도금은 기성고(Progress Payment)⁴⁹⁾에 따라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선수금과 유보금은 각 대금의 10%로 정하고 중도금은 대금의 80%로 정한다. 대규모 플랜트의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매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거나 공급자가 은행으로부터

47) ICC Model Contract, Art. 25 - Contract Price & Contract Schedule F.

48) 고정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때에도 물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법규의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증가된 비용,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현지인의 교육훈련비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조건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항과는 별도로 가격변동조항(escalation clause; risk and fall clause)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전계서, p.397 참조.

49)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 비중에 있어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 진행 정도를 의미한다.

터 대출을 받고 구매자가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⁵⁰⁾

특히 구매자가 대금지급을 위해 신용장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선수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만 신용장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다면 각 기성고마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러한 증명서를 신용장 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지정해야 한다.⁵¹⁾

4. 계약 불이행과 해결방안

구매자로서는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비의 조달이 지연되거나, 플랜트의 설치 및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또는 플랜트가 완공되긴 하였으나 당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성능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설비 조달의 지연이나 플랜트 인도의 지연이란, 불가항력 또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정한 기한 내에 설비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플랜트를 완공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일정한 산정기준과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명목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매자가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였으나 공급자가 그 연장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미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⁵²⁾을 두어 손해배상액을 미리

50) 이현목, 전계 블로그 (5), 참조.

51) ICC 표본 계약서에서도 L/C방식을 명시하고 있다(Art. 26.2).

52) 손해액의 입증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상에 상대방이 계약위반 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일수 또는 주일 당 얼마나, 총판매대금에서 지체하는 일수 또는

약정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⁵³⁾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는 위약금의 경우(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위법으로 무효가 되는 나라도 있음을 유의)⁵⁴⁾로서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손실 또는 기대이익의 손실 등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도록 하고, 누적적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과 성능보증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을 구분하되 이를 합산한 최고한도를 계약금액의 5% 이내 등 적절한 비율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⁵⁾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설비 자체의 품질이나 수명도 중요하지만 생산설비에 의한 제품생산시 제품의 품질, 생산능력, 원료의 소비량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매자는 플랜트를 완성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성능시험 결과 보증치에 미달하면 구매자는 운전조건의 변경, 장치의 개조 또는 기기를 대체한 후 성능시험을 다시 하게 한다.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손해를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행지연시의 지연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손해배상예정액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행지연시의 배상액과 합산하여 최고액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재차 성능시험을 위하여 장치의 변경·개조 또는 기기의 대체에 들어간 비용이 손해배상예정액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의 손실(loss of product) 혹은 기대이익의 손실(loss of

주일 당 일정 퍼센트 감액 등으로 표기된다. 동지, E. Reile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UN Conven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pp.201-202; 오원석,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 條項)의 有效性과 實務的 適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제 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2, p.71 참조.

53)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정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아님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54)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55) ICC Model Contract, Art. 29.

profit) 등의 간접손해(consequential damage)는 별도로 배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점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플랜트 수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대규모이고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며, 계약이행과 대금지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또한 공급자가 복수인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도 민간기업보다는 정부나 국영기업인 경우가 많다. 특히 구매자의 배후에는 시설의 입안·조사·설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컨설팅 회사, 공사시공을 감독하는 엔지니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이나 이행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있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다.

플랜트 수출 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 즉 공급자와 구매자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구제, 계약의 종료, 계약 종료 후의 사후조치 등 턴키계약 전반에 걸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가 모든 사항을 검토, 예측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도 없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다른 어느 국제거래계약 보다 계약의 성립, 즉 정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ICC는 플랜트 수출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턴키계약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플랜트 수출 계약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턴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턴키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자와 구매자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공급자나 구매자 어느 일방에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평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플랜트 수출 턴키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을 공급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고찰한바, 이를 위해 ICC에서 제공하는 턴키계약에 관한 표본 계약서인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조항의 해설을 통해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ICC 표본 계약서의 핵심인 제2장~제5장의 규정 내용과 각 장의 쟁점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턴키계약의

담당자들에게 실무에서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ICC 표본 계약서 제2장은 기술문서, 설비 및 부품의 공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고 플랜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술문서들과 플랜트가 완성된 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는 플랜트의 설치, 시운전, 최종 시험운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플랜트의 위험은 플랜트의 설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때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반면, 구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지 시공에 사용될 자재와 부품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합치하는지 검사하고 시험할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ICC 표본 계약서 제3장은 설비의 설치, 시험, 인도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 설비가 도착되면 공급자가 설비를 조립한 후 시험을 거쳐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구매자가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등을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데 있어서 완성시기, 완성시기를 도과한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공급자의 인력의 파견에 관한 사항, 감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 플랜트 시공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반면, 구매자는 공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구매자 소속 국가에서 받아야 할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하고, 공급자가 신청할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협력의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또한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플랜트를 인수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인바,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상호 합의를 통해 규정하여야 한다.

ICC 표본 계약서 제4장은 가격, 지급보증 및 은행보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계약대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통화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는 구매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 두 가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첫째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대금지급이 구매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지급

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후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규정이다. 반면,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턴키계약 대금의 총액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수익인 실비의 일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지급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액을 기재한 문자와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끝으로, ICC 표본 계약서 제5장은 계약 불이행과 해결방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이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이 되는지는 물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의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는 구매자의 계약위반 또는 그 관리자의 공사변경이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가산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구매자는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비의 조달이 지연되거나, 플랜트의 설치 및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또는 플랜트가 완공되긴 하였으나 당초 달성하고자 하였던 성능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공급지연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일정한 산정기준과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명목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였으나 공급자가 그 연장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어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상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 김용일·박광서, “무역거래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2.
- 김호정, 디자인빌드(Design Build)와 턴키(Turnkey)계약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할당방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計劃系」, 제26권 제8호, 대한건축학회, 2010. 8.
- 방민석,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현황 및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GRL 연구논총」, 제11권 제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2.
- 오원석, 최신 국제비즈니스계약, 삼영사, 2011.
- _____,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 條項)의有效性和 實務的適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2.
-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
- 윤준선·백준홍, “건축턴키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클레임 예방을 위한 클레임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2.
- 이승우, 턴키입찰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5.
- 이현목, “[이현목 변호사의 국제무역분쟁] 플랜트(Plant) 수출계약 실무 - 턴키 계약을 중심으로-(1)~(6) (<http://blog.naver.com/hunmook>), 2010.
- 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박영사, 2011.
- 한국수출입은행, 영문국제계약해설 개정증보판, 2006.
- ICC, 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ICC Pub. No. 653E, 2003.
- ICC,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 ICC Pub. No.

659E, 2007.

Reiley, 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UN Conven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Suggestions in the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 Focused on the Commentary of ICC Model Contract -

Oh, Won Suk
Lee, Ki Ok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in the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based on a study focused on the commentary of “ICC Model Contract” clause which is encouraged by ICC. Especially practical issues are inquired into on business and legal perspectiv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supply of technical documentation, equipment and spare parts, it is important to supplier and purchaser to agree on obtaining technical documents necessary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plant, and also components necessary for its maintenance.

Second, it is about erection, testing, taking over and training chapter. Both parties need to agree about the process of the arrival of equipments and assembly conducted by the supplier and following examination and also training purchaser to operate it

Third, when it comes to price, payment conditions, bank guarantees, parties are to make decision on the pricing, payment conditions and currency of contract-pay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ach an agreement of the issue of whether it is to be defined as delay 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also its consequences about rights and obligation.

Key Words : Turnkey Contract, Industrial Plant, ICC Model
Contract, Supplier, Purchaser.